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81,384,781	41,441,543
일반회계	1,225,384,781	36,761,543
특별회계	156,000,000	4,680,000
공기업특별회계	126,000,000	3,780,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000,000	2,070,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000,000	1,710,000
기타특별회계	30,000,000	900,000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872,181	26,165
수질개선특별회계	10,324,606	309,73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15,322	114,46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86,739	50,602
치수사업특별회계	1,429,371	42,88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035,381	151,061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6,536,078	196,082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4,500	135
기반시설특별회계	108,622	3,259
주택사업특별회계	187,200	5,61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22,10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4,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에 대해서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 경비
3.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4.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